

	한국어교육센터규정	규정번호	3-7-37
		제정일자	2025.05.01.
		개정일자	-
		개정차수	-
		소관부서	입학홍보협력처 (한국어교육센터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입학홍보협력처 산하 한국어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 업무,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한국어교육
2.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
3.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

제3조(조직) ①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-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, 센터의 소속 교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- ③ 센터의 운영을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4조(한국어교육센터운영위원회) 한국어교육센터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자문,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교육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어학연수생 모집, 학생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
2. 어학연수생 한국어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5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며, 전임교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7조(비밀유지) 위원회 업무에 관계한 교직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제8조(세부사항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.